



서민의 성공을 돕는 재단

2018년 결산지침

2018. 12.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SEOUL CREDIT GUARANTEE FOUNDATION

경영지원부 재무팀

2018년 결산지침

회계 결산에 관한 명확한 기준 마련으로 당해연도의 경영성과와 재정상태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2018년 결산지침을 수립, 운영하고자 함

I 개 요

■ 근거

○ 재단 회계규정 제6장 제100조(결산지침)

- ① 담당부서장은 결산일 15일전에 결산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결산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결산지침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회계단위별 결산일정
 2. 결산에 관한 기준과 원칙
 3. 결산정리에 관련되는 사항
 4. 결산에 관한 제 규정의 준수사항
 5. 기타 결산에 필요한 사항

■ 목 적

○ 재단 결산서 정확성 및 비교가능성 제고

- 기간별 재무제표의 통일성,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공통의 기준 제시

○ 재무제표 등 주요 서식 작성 기준 마련

- 결산에 대한 상세한 정보제공 및 분석을 위한 결산서식과 작성요령 제공
- 각 계정별 명세서 및 보조자료 작성을 통해 결산의 적정성 점검

○ 새로운 회계처리 사항 및 주요내용 정리

- 지방공기업 결산지침 및 대외 환경변화 등을 반영한 회계처리 기준 제시

II 결산 기본원칙

1. 재무결산

■ 적용 회계원칙

- 정관¹⁾ · 회계규정 · 회계업무처리기준에 근거하여 집행함을 기본 원칙으로 함
- 그 외 사항은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등 준수

■ 계정과목 분류체계

- 계정과목은 회계업무처리기준 및 결산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함
 - 회계업무처리기준 [별표] 계정과목 일람표 참조

2. 예산결산

■ 예산결산의 정의 및 목적

- 회계연도가 끝나고 예산집행이 종료된 후 1년 동안 실제 집행한 수입과 지출 내역을 예산과 비교하여 평가하는 과정임

■ 예산이월의 정의 및 목적

-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연도 예산을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제도
- '19년도 확정 예산액 + '18년도 이월배정액 = '19년도 예산현액
 - 이월된 예산은 차기연도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간주함
 - 차기연도 예산과 구분 관리하며, 합산된 총액을 예산현액으로 관리함
- 이월된 예산의 집행은 차기연도 결산에 포함

1) 제5장 회계 제28조(회계원칙) 재단의 회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업계의 회계처리 방법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회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Ⅲ 2018 회계연도 결산 주요사항

■ 퇴직연금운용자산 계정과목 추가

- 재무상태표상 퇴직급여충당부채 차감계정으로 퇴직연금운용자산 계정과목 추가

■ 상각채권매각이익 계정과목 추가

- 「구상권관리규정」 개정(회생지원부-241)으로 손익계산서상 영업외수익 항목에 상각채권매각이익 계정과목 추가

■ 재무상태표 표시방법 변경

- 유동부채 항목으로 표시하고 있던 대위변제준비금을 비유동부채 항목으로 표시

■ 손익계산서 표시방법 변경

- 「영업외수익 항목으로 표시하고 있던 구상채권상각충당금 환입, 대위변제준비금 환입, 대지급금상각충당금 환입 계정과목을 영업비용의 차감항목으로 표시

■ 합리적인 대위변제준비금 계상 기준 적용

- 2017년도 결산시부터 사고율 등의 차이가 있는 일반보증과 햇살론을 구분하여, 보증상품 성격에 따라 대위변제준비금과 구상채권상각충당금 등을 설정
- 2016년 중소기업청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요구(권고) 사항 이행
(2016년 서울신용보증재단 합동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요구서 통보, 감사담당관-2047호, 16.12.02.)

■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명세서 작성

- 2017년도 결산시부터 결산보고서에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명세서’와 ‘잉여금 처리 계획’작성 포함
(출자·출연기관 세입세출 결산보고 관련사항 안내, 공기업담당관-592, 17.01.10.)

■ 제세예수금 처리

- 매출시 발생한 제세예수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 후 잔액은 잡수익으로 정리
※ 예수금(제세예수금) 정리 추진계획, 재무팀-642, 14.10.22. 참조

■ 국가회계기준에 의한 원가계산 방법(종전과 동일)

- 프로그램원가 배부기준 : 사업조직별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위 사업부 원가 및 관리운영비로 귀속
 1. 경영전략부문 : 단위사업별 인원수로 관리운영비로 배부
 2. 사업전략부문 : 단위사업별 인원수로 간접원가로 배부

- 계정별 프로그램원가 배부기준

구 분		계정과목	배부기준
프로그램원가	직접원가	재보증료	전액 배부
		인건비	지점(보증, 관리, 자영업지원센터)인원 인건비 총액
		경비(지급수수료)	직접 배부 ²⁾ 또는 인원수 배부
		감가상각비	인원수 배부 (건물의 경우 임대면적)
		상각충당금전입	전액 배부
	간접원가	인건비	사업전략부문(보증지원부, 회생지원부) 인건비 총액
		경비	직접 배부 또는 인원수 배부
		감가상각비	인원수 배부 (건물의 경우 임대면적)
	관리운영비	인건비	경영전략부문(전략기획실, 인사부, 경영지원부, 전산지원부) 인건비 총액
		경비	직접 배부 또는 인원수 배부
감가상각비		인원수 배부 (건물의 경우 임대면적)	

2) 경비 중 직접배부 경비

IV 회계감사인의 업무범위

■ 회계감사인의 선임

- 2018회계연도 회계감사 용역 계약 체결(3차년도)

■ 감사완료 및 감사보고서 제출 :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

- ※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 제출 :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

■ 회계감사인 선임기준

-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반
- 지방자치단체 등 회계감사실적이 있는 회계감사인을 우선 고려
- 평상시 당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 경영자문으로 현저하게 경영개선
에 기여한 사례가 있는 회계감사인을 우선 고려
- 공인회계사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및 기업 결산감사 경험이 풍부한 자 등
- 회계법인인 감사인의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④의
규정 중 비상장법인에 대한 사항 준용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 ④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이사로 하여금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
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행하게 할 수 없다.

■ 회계감사 기본요구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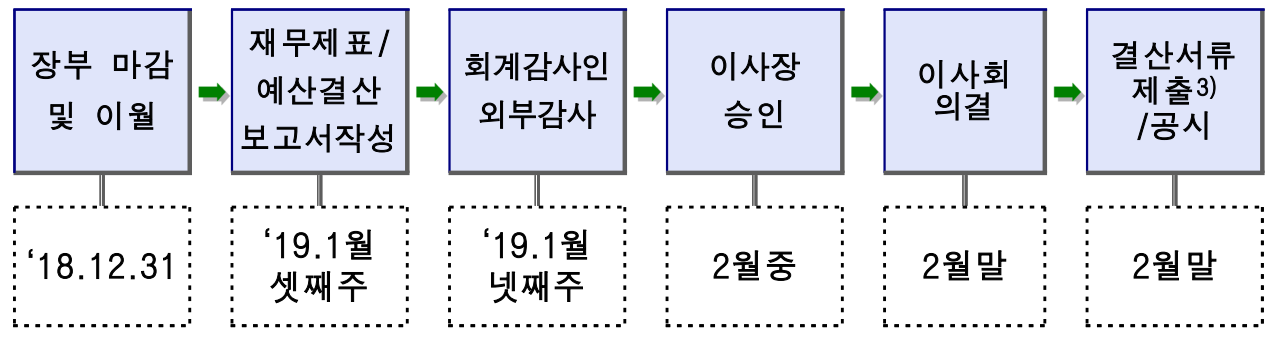
- 회계감사인으로 선임된 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의해 제정된 회계감사
기준 및 회계감사기준지침에 따라 회계감사하여야 함

1. 프로그램원가 : 등기소송비, 수수료(지급수수료)

2. 관리운영비 : 광고선전비, 국외여비, 보건의료비, 보험료, 복리비, 세금공과, 연수비, 전산업무비, 체육교양비, 포상비, 피복비

V 절차 및 추진일정

기말 결산 일정



부서별 요청자료 목록 : (붙임2)결산감사 준비자료 목록 참조 <끝>

3) 제5장 회계 제30조(예산과 결산)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결산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기본재산계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당해연도가 종료된 날부터 2월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